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5
----------	-----

2019년 3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세열 의원(찬성자 12명)
- 나. 제안일 : 2018년 12월 31일
- 다. 회부일 : 2019년 1월 7일
- 라. 상정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세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 1년 이상 미참여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단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타 : 입법예고(2019. 1. 11. ~ 2019. 1. 18.)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 중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에 대한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 시민참여옴부즈만제도는 최초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2000년 9월 15일)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 현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정의 청렴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32명이 시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참여하고 있음.

###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 개요>

- 최초 제도 도입 근거
  - ▶ '00.09.15. :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 현재 운영 근거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 제도 취지
  - ▶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 역할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시정전반의 제도개선 건의

○ 선발 인원 및 임기

▶ 임기 2년에 35명 이내로 구성되어 2년 이내 연임 가능

- 분과별 인원

구 분	소 계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분 야		· 복지정책 · 여성정책 · 취약계층 보호 등	· 시설물 안전 · 재해관리 · 각종공사 · 주택·건축	· 산업정책 · 공원녹지 · 환경기후 · 상 수 도 · 정보통신	· 교통정책 · 운수물류 · 도시계획 · 대중교통	· 아동권리 · 학교지원 · 평생교육 · 문화관광 · 문 화 재	· 법률구제 · 재무회계 · 인사행정 · 내부통제 등
계	35	6	6	6	6	6	5

○ 선발방법

▶ 조례 제25조 제3항에 의거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정

▶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학계, 법조계, 협회, 시민단체 등과 우리시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사 선발

○ 활동 내용

▶ 입회 분야 : 주 활동 분야로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장이 연초 제출한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에 인력풀 형태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요청으로 참여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 필요시

▶ 주민(시민, 직권)감사 참여 : 필요시

▶ 고충민원 참여 : 필요시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동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은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임기의 연임제한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음.

가. 연임 규정의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 안 제25조제4항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①~③ 생략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①~③ 생략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 현재, 시민참여옴부즈만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연임된 옴부즈만은 11명 수준임.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2019)>

분과	연번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연임등명시)
여성 복지	1	박동명	시의회전문의원	2018.6.24.~2020.6.23.	연임
	2	전석현	공무원	2018.6.24.~2020.6.23.	연임
	3	유정애	공무원	2017.3.16.~2019.3.15.	-
	4	변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7.3.16.~2019.3.15.	-
	5	정은숙	법무법인 태영	2017.3.16.~2019.3.15.	-
도시 안전	6	윤성내	지우건축사무소	2018.6.24.~2020.6.23.	연임
	7	박재원	(주)현대삼호중공업	2018.6.24.~2020.6.23.	연임
	8	이선우	(주)현우엠이씨	2018.6.24.~2020.6.23.	연임
	9	임흥식	(주)리종합건축사무소	2018.6.24.~2020.6.23.	연임
	10	류정수	(주)흥인이앤씨	2017.3.16.~2019.3.15.	-
	11	양태진	(주)조경그룹 이작	2017.3.16.~2019.3.15.	-
산업 경제 환경	12	전재필	공무원	2018.6.24.~2020.6.23.	연임
	13	정병선	모닝스타코리아	2018.6.24.~2020.6.23.	연임
	14	정문영	현대산업개발	2018.6.24.~2020.6.23.	연임
	15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2017.3.16.~2019.3.15.	-
	16	이문기	공무원	2017.3.16.~2019.3.15.	-
도시 교통 계획	17	유수현	(주)이너콘클리닉	2018.6.24.~2020.6.23.	연임
	18	이병운	(주)도가종합건축사무소	2017.3.16.~2019.3.15.	-
	19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2017.3.16.~2019.3.15.	-
	20	위화정	한국청소년보호연맹	2017.3.16.~2019.3.15.	-

분과	연번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연임 등 명시)
교육 문화	21	이수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3.16.~2019.3.15.	-
	22	이병희	(주)삼환기업	2017.3.16.~2019.3.15.	-
	23	하지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7.3.16.~2019.3.15.	-
	24	양미영	법무법인한울	2017.3.16.~2019.3.15.	-
	25	김영숙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7.3.16.~2019.3.15.	-
	26	정무도	공무원	2017.3.16.~2019.3.15.	-
	27	윤상수	동남회계법인	2017.3.16.~2019.3.15.	-
일반 행정	28	이엄현	공무원	2018.6.24.~2020.6.23.	연임
	29	권병추	공무원	2017.3.16.~2019.3.15.	-
	30	김문현	공무원	2017.3.16.~2019.3.15.	-
	31	이명헌	수륵아시아법률사무소	2017.3.16.~2019.3.15.	-
	32	박준양	공무원	2017.3.16.~2019.3.15.	-

- 개정안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지속적인 연임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의 참여 확대’ 라는 장점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옴부즈만의 활동제한’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해촉의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단서)

- 안 제25조제4항은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①~③ 생략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①~③ 생략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u>연임할 수 있다.</u> <u>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⑤~⑥ 생략

- 현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나(연임 가능), 2018년도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활동실적의 편차가 크고, 1회만 활동한 옴부즈만도 있으며(3명), 활동실적이 전무한 옴부즈만도 3명이나 있는 상황임.

<2018년도 시민참여옴부즈만별 활동실적>

(단위: 횟수, '18.12월말 기준)

연번	계	공공사업		민원배심 법정	주민·시민 감사	비고
		입회	감시			
1	14	10	1	3		
2	14	10	2	2		
3	13	12	1			
4	6	5	1			
5	1		1			
6	7	5	1	1		개인 사유로 해촉(18.7)
7	16	12	1		3	
8	8	5	1		2	
9	13	13				
10	6	6				
11	5	5				
12	12	11	1			
13	10	9	1			
14	8	7	1			
15	9		2	4	3	
16	12	9	2		1	
17	26	25	1			
18	11	10	1			
19	6	6				
20	12	11		1		
21	19	14		3	2	
22	13	11	2			
23	9	8		1		
24	7	7				
25	10	9	1			
26	13	12		1		
27	14	14				
28	1				1	
29	16	16				
30	1					1(토론회)
31	-	-	-	-	-	-
32	-	-	-	-	-	-
33	-	-	-	-	-	-

※ 위원들의 참여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9.4건으로, 최소 0건에서 최대 26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목적과 역할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인바,
  - 활동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참여 옴부즈만으로 인한 옴부즈만간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임기내 활동 실적 저조로 해촉되는 옴부즈만들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시 취지를 명확히 알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세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5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31일

발 의 자 : 이세열 의원(1명)

찬 성 자 : 김달호, 김재형, 김제리,  
김화숙, 성흠제, 송재혁,  
유용, 이광성, 이준형,  
이현찬, 정진술, 한기영  
의원(12명)

## 1. 제안이유

다양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여 실적이 부진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4항).

나. 1년 이상 미참여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단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옴부즈만 해촉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p> <p>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p> <p>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p> <p>⑤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p>	<p>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위원회에서 심사 선별하여 시장이 위  
촉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  
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